

영등포구의회  
제159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1. 2. 24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李 憲 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 1. 경 과

의안 제43호로 2011년 2월 10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 제안이유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와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안 제8조)

-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과 유통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11명 이내로 구성

### 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업무(안 제10조)

-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수행, 중재 및 분쟁 조정
-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구청장이 협의 요청하는 사항

#### 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안 제12조)

- 영등포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 라. 전통상업보존구역내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제한 (안 제14조 및 제15조)

-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함

#### 마. 조례안의 한시적 효력(안 부칙 제2조)

- 안 제10조제7호·제8호, 안 제12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 및 제13조의3의 규정이 효력을 가지는 기간인 2013년 11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짐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제13조의3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2010. 11. 24일 일부개정 공포되어 법 제8조제2항·제3항, 제13조의3의제1항·제2항에 의거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지식경제부와 협의를 통해 마련된 서울시 표준 조례안에 따라 제정

- 대규모점포 등과 현존하는 전통시장간의 상생발전을 통해 서로간 WIN-WIN 하여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목적을 두었음
- 대규모점포 외에도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 회사가 직영하는 점포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와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 등”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도 등록제를 확대하면서 전통 상업보존구역 안에서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우리구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설치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 기업간 협의 및 분쟁을 조정·중재로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는 협상의 공간을 마련하여 지역실정에 맞도록 유통산업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기업형슈퍼마켓(SSM)을 둘러싼 지역 슈퍼마켓 등 상인들과 대형 유통업체간 마찰과 분쟁을 줄이고 상생협력 방안을 찾기 위한 자율조정 노력이 활성화 될 것으로 사료됨
- 서울시 표준안과 비교 검토하면 안 제8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소관국장으로 지정하였고, 협의회 구성 인원을 10인 이내에서 11인 이내로 하였으며, 안 제10조제10호에

협의회 업무 중에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 하였으며,  
상생발전 추진계획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서울시장 보고사항을 삭제하였음

- 이 조례안은 서울시 표준안이 통보되어 표준안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법 체계 및 자구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참 고 자 료

## 1 유통산업발전법

###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하고자 하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의 위치가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등록 제한 및 조건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13조의3(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 절차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2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가. 업종의 특성

나. 상시 근로자 수

다. 자산규모

라. 매출액 등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소기업)과 중기업(중기업)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 3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소상공인”이라 함은 소기업중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대규모점포와 시장과의 협력)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점포(이하 이 조에서 "대규모점포"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주변시장과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주변시장의 상인에 대한 상거래기법 교육
2. 주변시장과 대규모점포의 공동 홍보
3. 주변시장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자문
4. 주변시장과 대규모점포의 공동 이익을 위한 협력사



## 5

# 기업형 슈퍼마켓[企業形-, Super Supermarket]

## 정의

대형 유통업체들이 운영하는 슈퍼마켓으로, 일반 슈퍼마켓보다는 크고 대형마트보다는 작은 규모이다.

대형슈퍼마켓 또는 SSM(Super Supermarket; 슈퍼슈퍼마켓)이라고도 부른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새로운 대형마트의 부지확보와 출점이 어렵게 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개인업자가 운영하던 슈퍼마켓 시장에 진출을 확대 하면서 생긴 중·대형 슈퍼마켓을 뜻한다. 매장면적 330㎡(약 100평) 이상, 3,000㎡(약 900평) 이하의 규모로, 대체로 일반 슈퍼마켓과 편의점보다는 크고 대형마트보다는 작다.

주거지 중심의 근린상권에 입지하여 접근성이 뛰어나다. 대형마트의 유통망을 이용하여 일반 슈퍼마켓과 편의점에서 갖추기 어려운 농축산물과 수산물 등의 1차 신선식품을 중심으로 다양한 물품(가공식품·위생용품·가사용품·의류·문구류 등)을 취급한다.

대표적인 기업형슈퍼마켓으로 GS리테일의 '○○슈퍼마켓', 롯데쇼핑의 '○○슈퍼', 삼성테스코의 '○○○○ 익스프레스', 신세계 이마트의 '○○○에브리데이' 등이 있다

## 6

## 대규모 점포 및 재래시장 현황

## 현황

구분	계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시장			기타 대규모점포
						등록시장	인정시장	무등록시장	
합계	38	4	2	2	3	14	2	10	1

## 대규모점포 현황

연번	업태	상호명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개설일	점포 수	종사 자수	영업장 면적(m)
1	대형마트	코스트코 홀세일	(주)코스트코코리아 (프레스튼씨드래퍼)	양평동3가 65	2630-2653	1994.10.07	460	520	8,724
2	대형마트	롯데마트 영등포점	롯데쇼핑(주) (이철우)	영등포동8가 62-1	2165-2510	2001.9.24	94	156	29,275
3	대형마트	홈플러스 영등포점	삼성테스코(주) (이승한 외1)	문래동3가 55-3	2165-8000	2001.11.30	41	90	64,312
4	대형마트	신세계이마트 여의도점	(주)신세계(최병렬)	여의도동47	2280-1050	2008.5.7	1	103	6,903
5	전문점	로데오와	(주)집과사람로데오와 쇼핑몰(김영곤)	문래동3가 55-5	2635-2040	2003.3.31	100	150	7,510
6	전문점	룩스쇼핑센터	인피니룩스개발(주) (박인수)	문래동3가 55-16	2628-9191	2008.4.22	138		43,757
7	백화점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주)롯데역사 (이원준)	영등포동 618-496	2670-8831	1991.4.15	630	2300	65,141
8	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영등포점	(주)신세계 (박건현)	영등포동4가 434-5	2639-1040	1982.12.15	620		17,298
9	쇼핑센터	타임스퀘어	(주)경방 (김담)	영등포동4가 441-21	2638-2150	2009.9.16	189	4487	167,604
10	쇼핑센터	썬프라자	(주)홍아상사 (박인중)	대림동 909-2	842-0008	1982.4.22	175	215	8,734
11	쇼핑센터	영등포 점프밀라노	(주)점프쇼핑센터 (김인옥(관리자))	영등포동3가 7	2166-6800	2005.12.1			15,856
12	기타	이천일아울렛	(주)이랜드리테일 (오상훈)	당산동5가 16-7	2631-7700	2001.5.25	79	120	5,425

## ■ 재래시장 현황

연번	시장명	구 분	소 재 지	시장규모 (㎡)	영업장면적 (㎡)	점포수
1	삼구시장	등록시장	영등포동5가19	1,178	2,954	67
2	동남상가	등록시장	영등포동5가24	1,464	3,090	61
3	영신시장	등록시장	영등포동5가18	2,230	2,235	192
4	도림시장	등록시장	도림동 176	1,794	1,794	41
5	양남시장	등록시장	양평동1가30	1,953	1,956	52
6	신동시장	등록시장	신길동 259	937	937	31
7	영등포기계상가	등록시장	양평동1가247	7,513	3,263	165
8	대신시장	등록시장	신길동116 -15	4,609	4,509	176
9	대림시장	등록시장	대림동963-5	5,001	5,001	82
10	두암종합시장	등록시장	대림3동717	2,314	2,314	-
11	주)사려가	등록시장	신길동254-1	7,488	6,459	90
12	주)신영사려가	등록시장	신길동256-9	4,077	3,871	4
13	영일시장	등록시장	문래동3가10	23,140	2,310	76
14	영등포유통상가	등록시장	당산동2가30	21,754	41,937	810
15	영진시장 A동	무등록시장	신길동2365	4,092	2,486	128
16	영진시장 B동	무등록시장	신길동2363	1,580	1,580	-
17	영등포재래시장	무등록시장	영등포동5가6	816	6,600	269
18	제일상가	무등록시장	영등포동5가 18	1,061	1,061	51
19	조광시장	무등록시장	영등포6가 121-9	19,800	19,800	310
20	로타리상가	무등록시장	영등포동5가 20	1,283	2,650	54
21	남서울상가	무등록시장	영등포동5가 16.17	2,600	1,821	48
22	중앙노점	무등록시장	영등포동5가 20	1,848	1,848	45
23	우리시장	무등록시장	대림1동904 -20	3,800	3,800	107
24	양평시장	무등록시장	양평동4가 161-180	1,320	1,320	25
25	신길시장	인정시장	신길2동221 -1	2,159	2,159	75
26	대림중앙시장	인정시장	대림2동 1075-47	19,797	2,300	88